<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-611호>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『자연공원법』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. 6. 26.

광주광역시 동구청장

1. 제 목 :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7. 6. 26 ~ 2017. 7. 10(15일간)
3. 공고내용

성명	주 소	위반일	위반 내용	예정된 처분내용	관련법규
채*회	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***번길 **-* (두암동)	2017.6.4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	과태료 500,000원 (자진납부 시 감경금액 : 400,000원)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5호

4. 기 타
   가.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.
   나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, 장애인(3급이상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이상),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간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(50%)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다.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의견제출처 :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(☎ 062-608-2963, FAX 062-608-2999)

의 견 제 출 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주소 :

(전화:)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

비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